

입찰유의서

본 유의서는 과천시 참마을로 9번지(구 문원동 199번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에 소재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허가를 위한 일반 공개 입찰 및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찰재산의 소재지) 입찰공고문에 부하는 사항을 참조한다.

제2조(입찰재산 현황) 입찰공고문의 재산현황을 참조한다.

제3조(관련 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지방재정법
5. 부가가치세법

제4조(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부하는 사항을 참조한다.

제5조(입찰 방법) 일반 공개경쟁(지역제한 없음) 입찰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부과 등)

- ①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②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가격(부가세포함)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입찰등록 및 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시스템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설명)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에 따른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제반사항을 숙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확인치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제9 조(입찰)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사항과 같다.

제10조(입찰서 제출) 「온비드」 시스템의 제출요령에 의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등 납부 및 귀속)

- ①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기간 내에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현금(입찰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포함)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2조(입찰보증금 환불)

- ① 입찰종료 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은행계좌로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②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제13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관계 규정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 ①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에 미달한 입찰
- ③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④ 단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15조(낙찰자의 결정)

- ① 낙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에 설치된 난

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 ④ 차순위 진행 방식이 설정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 ① 낙찰자는 공단의 신청 통보일로부터 8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1차 연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낙찰가격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징수하고, 사용료 부과일로부터 허가시설의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등)

- 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단은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기 일시를 공고한다.
-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인다.

제18조(입찰 요령)

-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화면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입찰 전 유의사항)

-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입찰에 부하는 사항, 사용허가조건, 입찰공고문, 각서 등 제반 입찰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사용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허가받은 재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손해보상(기 납부한 사용료 환불 포함)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 ⑤ 사용자가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으로 인한 인명, 재산,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비용 부담과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특기사항)

- ① 허가시설 내 모든 시설물과 비품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공단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하며 이럴 경우 공단은 사용자의 손실을 일체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공단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로 인한 어떠한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⑥ 사용자는 일반시중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영업장외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영업장외에서의 이동판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허가가 취소되어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재산을 명도 하여야 한다.
- ⑨ 영업장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⑩ 영업장내 물품 등의 도난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⑪ 사용자는 취급상품 판매 가격표(이용 요금표)를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적정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⑫ 사용자는 안내표지판, 각종 광고물을 임의로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
- ⑬ 영업시간 이후 사용 허가 시설 내에 유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⑭ 사용허가 시설물 주변의 청결유지, 판매시설 종사원의 이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의 제공을 이행하여야 합니다.